

대한민국정부



제19677호 2020. 1. 29.(수)

【법 률】

○ 법률제16871호(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6
○ 법률제16872호(국립대학법인 서운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7
○ 법률제16873호(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8
○ 법률제16874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9
○ 법률제16875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9
○ 법률제16876호(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13
○ 법률제16877호(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	14
○ 법률제16878호(국민 안전교육·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5
○ 법률제16879호(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5
○ 법률제16880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16
○ 법률제16881호(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	19
○ 법률제16882호(재해위험 기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
○ 법률제16883호(주민부표법 일부개정법률)	21
○ 법률제16884호(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22
○ 법률제16885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3
○ 법률제1688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24
○ 법률제16887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5
○ 법률제16888호(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6
○ 법률제16889호(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26
○ 법률제16890호(청원법 일부개정법률)	27
○ 법률제16891호(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8
○ 법률제16892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30
○ 법률제16893호(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	30
○ 법률제16894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35

(이면 계속)

발행 행정안전부 문의 ☎ (044)205-1492, 205-1493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 법률제16895호(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36
○ 법률제16896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39
○ 법률제16897호(세만급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41
○ 법률제16898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44
○ 법률제16899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45
○ 법률제16900호(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45
○ 법률제16901호(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8·화성화에 관한 법률)	46
○ 법률제16902호(항만법 전부개정법률)	55
○ 법률제16903호(장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05
○ 법률제16904호(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106
○ 법률제16905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126

【대 통령령】

○ 대통령령제30360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29
○ 대통령령제30361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130
○ 대통령령제30362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31
○ 대통령령제30363호(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32
○ 대통령령제30364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134
○ 대통령령제3036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135
○ 대통령령제30366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136
○ 대통령령제30367호(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37
○ 대통령령제30368호(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	138
○ 대통령령제30369호(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38
○ 대통령령제30370호(공무원 직무박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139
○ 대통령령제30371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40
○ 대통령령제30372호(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42
○ 대통령령제30373호(후천성면역질환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44
○ 대통령령제30374호(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45
○ 대통령령제30375호(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46
○ 대통령령제30376호(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147
○ 대통령령제30377호(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49
○ 대통령령제30378호(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49
○ 대통령령제30379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50
○ 대통령령제30380호(중소기업 사업진흥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51
○ 대통령령제30381호(자본시장과 금융부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52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제1항에 따라 골재의 채취기간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의 경우에는 주요 어종의 산란시기를 채취금지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의4 제1호다목 1) 및 2)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를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끝재를 채취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끝재채취 중지 1개월	끝재채취 중지 2개월	끝재채취 중지 3개월	허가취소
1) 채취금지 기간에 끝재를 채취한 경우					
2) 그 밖에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끝재를 채취한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등이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의 채취를 허가하는 경우에 주요 어종의 산란시기를 채취금지 기간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끝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시 정해진 채취금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령 문 재 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관
장 김 현 미

◎대통령령 제3037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2호허목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검사기간 도래 후에 자동차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연장 또는 유예 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검사 지연기간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검사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검사유료기간 만료 후에 자동차가 폐차장에 입고된 경우 종전에는 폐차장 입고일 이후의 기간을 검사 자연기간에 포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검사유예절차를 거쳐 검사 자연기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20년 1월 29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중 소 벤처
기 업 부 장 관 박 영 선

◎대통령령 제30380호**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2.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4.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5. 법 제32조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의 승인업무 중 승인신청서의 접수,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 등의 업무만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하고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던 것을 중소기업 사업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는 승인 및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업무도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의